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강민국·서천호·박성민

김소희 · 신동욱 · 주호영

이헌승 · 윤한홍 · 이종욱

이상회 • 조승화 • 박덕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법률 제10691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2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43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4년 8월"을 "2027년 12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	②(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
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례)
관하여 <u>2024년 8월</u> 31일까지	<u>2027년 12월</u>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	
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	
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	